

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19 - 495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(행위자)에게 「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」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,수취인불명,주소불명,기타)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

2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건 축 주		위 반 건 축 물 현 황					
성 명	주 소	대지위치	구분	구조	용도	면적	위법내용
김○중	화성시 10용사로 28○,○동○호(능동,○)	평택시 서정동 905-○	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	① 4층 조립식패널 주택 40.42㎡ 불법 건축			건축법 제14조

3. 처분근거 : 「건축법」 위반에 따른 제79조, 제80조

4. 공고기간 : 2019. 12. 06. ~ 2019. 12. 20.(14일간)

5. 공고장소 : 관할 행정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
6. 문 의 처 : 송탄출장소 건축복지과(☎031-8024-6541). 끝.

2019. 12. 06.

평택시 송탄출장소장

